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96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오세희·박지원·박수현

박희승 • 백승아 • 정진욱

이병진 • 이광희 • 정동영

김한규 · 문금주 · 김주영

허성무 • 전진숙 • 김남근

김 윤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 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 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4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통 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

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 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 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있다.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

- 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 등을 권고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삭제등을 명령받은 해외통신 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권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결과"를 "안전성조사 결과,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성조사"를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		
	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		
	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		
	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u>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u>		
	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u><신 설></u>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		
	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자를 말한다.</u>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 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 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 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 력에 관한 사항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 매 해외제품(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 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 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

<u><신 설></u>

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 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 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 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 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 이버몰에서 해당 직접구매 해 외제품의 삭제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 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기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권고나명령의 전부 또는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u>④</u>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
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u>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
고,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
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 및 제4
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u>사업자 또는 제11조의</u>
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삭제등을 명령받은 해외통신판
<u>매중개자</u>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 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u>사업</u> <u>자</u>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 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저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u>안전</u> 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

②
권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명령
③사업
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④ (현행과 같음)
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u>안전</u>
성조사 결과, 제9조의4제1항에

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글	표할 수	=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이 <u>안전성조사</u>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
전성조사 결과
②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
<u>다)</u>
<u>.</u>
③ (현행과 같음)